

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63

제출일자 : 2004. 1
 제출자 : 달성군수 

□ 개정이유

지난 태풍 매미와 관련한 재해복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대한 인력을 추가 지원하고,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등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절대 부족한 일부 부서에 대한 인력 지원 등 고시된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집행부의 정원 일부를 증원하여 누수없는 군정추진으로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□ 개정근거

-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시행지침
【자제12200-247(2003. 5. 9)】

□ 주요골자

-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 정원을 “611”을 “620”으로 함.(안 제2조)
- 집행기관의 정원을 “601”을 “610”으로 함.(안 제2조제1호)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

□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없음

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“611”을 “620”로 하고, 동조 제1호중 “601”을 “610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
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611명</u> 이며 다음	----- <u>620명</u> -----
각호와 같다.	-----
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601명</u>	1. ----- : <u>610명</u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